

부산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3335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다영

피고(선정당사자) B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1. 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과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F 사이에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5/1870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선정자 F, 선정자 G은 C에게 각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5/3740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C과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F 사이에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선정자 F, 선정자 G은 C에게 각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C과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F 사이에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F은 C에게 각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가. C과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F 사이에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60/1040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F은 C에게 각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60/208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H는 C에 대해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H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97747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C)는 원고(주식회사 H)에게 15,405,729원 및 그중 1,761,535원에 대하여 2016. 6. 4.부터 값는 날까지 연 23.7%, 3,200,000원에 대하여 2016. 6. 4.부터 값는 날까지 연 24.7%, 9,833,337원에 대하여 2016. 6. 4.부터 값는 날까지 연 23.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0. 5.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H는 2019. 4. 3.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위 나.항의 채권양도로 인해 현재 C은 원고에게 36,340,549원 및 그중 금 4,900,001원에

대하여는 2022.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3%의, 4,961,535원에 대하여는 2022.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의, 4,933,336원에 대하여는 2022.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3%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라. C의 어머니인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3. 25. 사망하였는데, 공동상속인으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B, 피고 F, J, 원고의 채무자 C, K이 있다. 따라서 피고 B, 피고 F 및 C은 남매지간이고 C의 상속지분은 1/5이다. 한편 피고 G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마.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2 목록 기재 1항부터 4항 기재 부동산이 있는데, 위 상속재산들 중 1/5 지분은 C이 상속받아야 함에도 상속인들은 2019. 10. 21. 위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 B, 피고 F만이 상속받은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다.

바.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상속재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금 기준으로 35,848,87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무자력인 상태였다.

사. 피고 G은 2021. 4. 16. 어머니인 피고 B으로부터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5/748 지분’과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아 이를 전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1분의 5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 B, 피고 F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과 피고 B, 피고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 B, 피고 F, 피고 B으로부터 증여받은 전득자인 피고 G의 악의는 모두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 B, 피고 F은 C과 형제 또는 남매지간이지만 오래동안 왕래가 없어 C이 원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 G 또한 마찬가지로 C의 채무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B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1, 2항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별지2 목록 기재 1항 부동산

○ 위 1항 부동산의 경우 애초 망인의 지분이 155/374 이므로, C의 상속지분은 $155/1870(= 155/374 \times 1/5)$ 이고, 피고 B와 피고 F의 명의로 각 155/748 지분씩 상속등기가 경로되었는 바, 피고 B와 피고 F이 원상회복으로 C에게 반환해야 하는 지분은 각 $155/3740(= 155/748 \times 1/5)$ 지분이다.

○ 그런데 피고 B은 2021. 4. 16. 자신의 155/748 지분을 아들인 피고 G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여 주었는 바, 전득자인 피고 G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155/3740 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 결국 C에게 수익자인 피고 F, 전득자인 피고 G은 각 위 부동산 중 155/3740 지분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별지2 목록 기재 2항 부동산

○ 애초 망인의 지분이 피고 B와 피고 F의 명의로 각 1/2 지분씩 상속등기가 경로되었는 바, 피고 B과 피고 F이 원상회복으로 C에게 반환해야 하는 지분은 각 1/10 지분($1/2 \times 1/5$)이다.

○ 그런데 피고 B은 2021. 4. 16. 자신의 1/2 지분을 아들인 피고 G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여 주었는 바, 전득자인 피고 G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1/10 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 결국 C에게 수익자인 피고 F, 전득자인 피고 G은 각 위 부동산 중 1/10 지분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3) 별지2 목록 기재 3항 부동산

위 3항 부동산의 경우, 애초 망인의 지분이 피고 B와 피고 F의 명의로 각 1/2 지분씩 상속등기가 경로되었는 바, 피고 B과 피고 F이 원상회복으로 C에게 반환해야 하는 지분은 각 $1/10(= 1/2 \times 1/5)$

지분이다.

4) 별지2 목록 기재 4항 부동산

위 4항 부동산의 경우 애초 망인의 지분이 60/208 이므로, C의 상속지분은 $60/1040 (= 60/208 \times 1/5)$ 인데, 피고 B와 피고 F의 명의로 각 60/416 지분씩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피고 B와 피고 F이 원상회복으로 C에게 반환해야 하는 지분은 각 $60/2080 (= 60/416 \times 1/5)$ 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

별지1

선 정 자 명 단

- 1. B
 - 2. F
 - 3. G
- 끝,

별지2

부 동 산 목 록

1. 부산광역시 중구 L 대 37.4㎡

2. 부산광역시 중구 L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M

조표N 목조스레트지붕단층주택 34.0㎡

3. 부산광역시 중구 O 대 26.4㎡

4. 부산광역시 중구 P 대 20.8㎡, 끝.

